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22
----------	------

2017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안일 : 2017년 8월 14일
- 다. 회부일 : 2017년 8월 16일
- 라. 상정일 :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8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가. 제안이유

- 성북구 지역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및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공용공간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 청년사업, 공간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시설개요

시 설 명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운영	
위 치 · 규 모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5가 147-10 / 506.7m ²	
지 원 시 설	휴게공간, 코워킹스페이스, 공유부엌, 연습·창작공간, 사무실 등	
개 소 일 자	2017. 11월(예정)	
위 치 도		

2)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2018.1.1.~2019.12.31)
- 위탁업무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시설 관리·운영 일체
 - 스스로 청년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주체형성’ 중심의 생태계 조성
 - 청년문제 발견·해결을 위한 포럼·강좌·모임 등 커뮤니티 지원
 - 도시·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실행
 - 지역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학교 운영
 - 청년 간 지식·경험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안 도출
 - 청년공간 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
 - 공간 이용자 멤버십 운영, 공간 이용 당사자 운영위원회 구성
 - 성북구 청년 공간운영자 네트워크 구성
 -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연구·학습모임 지원

- 소요예산 : 320백만원('18년도 예산편성 추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3)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제19조

4)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 경험이 있고, 민간자원과 연계가 활발한 민간기관(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 다양한 민간 자원과 연계, 활용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의 창의적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구 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무중력지대 성북을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무중력지대 성북 현황	
시 설 명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운영
위치·규모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5가 147-10 / 506.7m ²
지원 시설	휴게공간, 코워킹스페이스, 공유부엌, 연습·창작공간, 사무실 등
개소 일자	2017. 11월(예정)
위 치 도	 

- 무중력지대 성북은 201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민간위탁 동의안 (1334)’을 제출하였으나, 조성 예정부지(진각종재단, 하월곡동 22번지, 진각종재단과 성북구청간 장기무상임대 제공 협약체결)에 대한 협의가 중단됨에 따라 2016년 8월 25일 동 안건을 철회하였으며, 2017년 8월 14일 조성 부지를 변경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제출한 것임.
- 본 동의안은 약 2년의 기간 동안(2018. 1. 1 ~ 2019. 12. 31) 무중력지대 성북의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기간 : 2018. 1. 1 ~ 2019. 12. 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공모
- 사업비 : 연간 320백만원(2018년도 예산편성 추진)
- 위·수탁 사무
 - 스스로 청년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주체형성' 중심의 생태계 조성
 - 청년문제 발견·해결을 위한 포럼·강좌·모임 등 커뮤니티 지원
 - 도시·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실행
 - 지역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학교 운영
 - 청년 간 지식·경험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안 도출
 - 청년공간 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
 - 공간 이용자 멤버십 운영, 공간 이용 당사자 운영위원회 구성
 - 성북구 청년 공간운영자 네트워크 구성
 -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연구·학습모임 지원

나. 무중력지대 성북 관련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무중력지대는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활동연계를 통해 청년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들의 소통 및 모임의 공간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무중력지대 대방과 무중력지대 G밸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이와 유사한 청년시설로 청년허브(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소재)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조성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무중력지대 성북, 서대문 등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등 청년시설을 비교해보면, 사업내용면에서는 청년 활동생태계 구축 등으로 유사하나 크게 대상과 운영시간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음.

〈청년공간지원 등 유사시설 비교〉

구 분	청년교류공간	무중력지대	청년허브
설 치 근 거	市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市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市 청년기본조례 제18조 (청년허브의 설치·운영)
운 영	민간위탁(예정)	민간위탁	민간위탁
조 성 규 모	거점(1개소)	서울시, 자치구 구별	市の 중간지원 조직
주 이용대상	청년활동 그룹 ※ 국내·외 청년	청년(단체)	청년(단체), 일반시민
이 용 시 간	365일, 24시간 운영	월~금 : 10:00~22:00 토 : 10:00~16:00(대방)	월 ~일, 10:00~10:00
주 요 공 간 설	활동지원공간 (강의실, 세미나실, 휴게 카페, 나눔부엌 등)	활동지원공간 (강의실, 세미나실, 휴게 카페, 나눔부엌 등)	다목적홀, 창문카페, 휴게공간, 세미나실 등
사 업 내 용	- 청년활동생태계 구축협력서비스 제공 - 청년활동 그룹 간 교류 및 역량강화 - 청년문제 해결 프로젝트 및 연구지원 등	- 청년활동생태계 구축협력서비스 제공 -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등	- 청년 진로모색 및 학습경험 지원제공 - 청년 자립공존 및 공간·활동 지원 - 혁신사례 발굴 및 공유, 청년정책 의제발굴 등

- 민간위탁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무중력지대 성북은 201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진각중 부지에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부지 관련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2016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설치·운영 변경계획을 수립(대체부지 마련)하였고 (2016. 10. 7.)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음.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경과 〉

□ 추진근거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33호, '15.11. 9)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 2016년 서울청년의회 10대 정책제안('16. 8.)

□ 추진경과

- 동북권 무중력지대 설치 '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15. 8월)
 - 동북권(성북지역)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제안
- 청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설치 자문회의 개최(2회, '15. 9~10월)
 - 지역청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참여, 자문 및 의견수렴
- 청년주도의 무중력지대 성북 설치 추진 '청년포럼' 개최('16. 1. 20.)
 - 지역 청년단체 및 청년, 전문가, 자치구 등의 설치·운영 의견수렴
- 무중력지대 성북 추진 '공간기획 자문회의' 개최(3회, '16. 3~6월)
 - ※ 무중력지대 공간기획 지역청년 의견수렴(오픈테이블 등) 실시(3~5월)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16. 6. 17.)
- 당초 부지에 대한 협의중단 및 대체부지 현황 통보
(성북구 일자리경제과-36125호, '16. 8. 22.)
 - 당초 추진 부지(진각중 부지)에 대한 성북구와 진각중측의 협의중단으로 성북구에서 시(청년정책담당관)로 협의중단 통보 및 대체부지 현황 제출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대체부지 검토회의 개최(2회, '16. 8~9월)
- 2016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설치·운영 변경계획 수립('16. 1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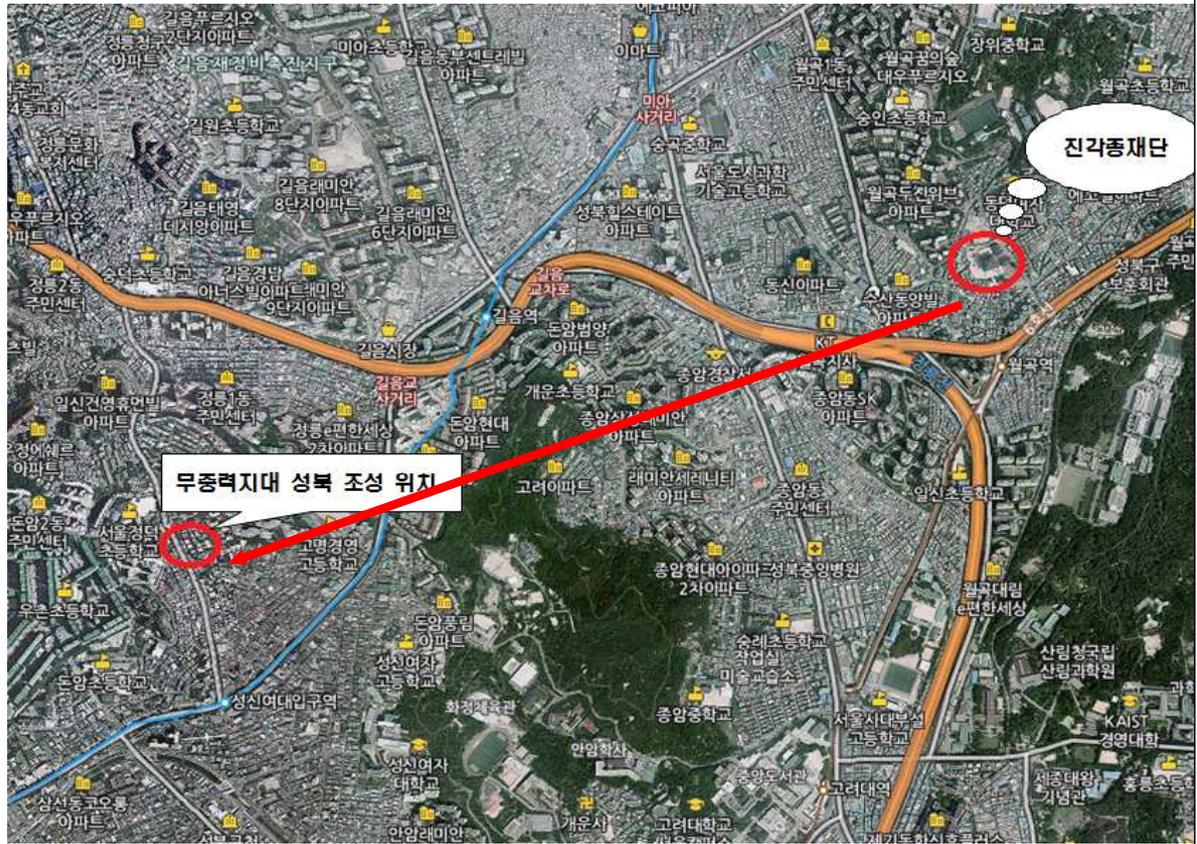
□ 주요변경(안)

- 설치장소 : 성북구 동선동 5가 147-10 등 4필지(506.7㎡)
- 설치방법 : 市소유 유휴부지 활용 신축

□ 설치개요(안)

- 기 간 : '17. 4월~'17. 10월(7개월)
- 위 치 : 성북구 동선동 5가 147-10, 147-11, 156-2, 156-3(4필지)
- 규 모 : 연면적 506.7㎡
- 건축구조 : 신축 건축물(컨테이너 조립)

□ 위치도



-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대상 시설운영 또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을 선정·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혁신기획관은 무중력지대 양천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를 제시하고 있음.
- 무중력지대의 조성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통해 다양한 참여 및 소통욕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 무중력지대의 민간위탁은 추진근거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당해 민간위탁 운영근거로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으로, 민간위탁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10.8.>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8.>

1.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하면, 민간위탁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중력지대의 민간위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17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19조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로 민간위탁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또한 제시된바 있음.

- 둘째,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무중력지대는 2곳(무중력지대 대방, 무중력지대 G밸리)이고, 새로 조성하려는 청년공간은 무중력지대 서대문, 양천, 성북으로 지역적 편중성 문제는 없는지 여부와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무중력지대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및 지역적 설치 기준이나 원칙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셋째, 특히, 조성 예정지(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5가 147-10)는 당초 조성지(성북구 화랑로13길 17)와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인 점, 조성 예정지 인근에는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1)(서울 성북구 길음동 1286-8, 건립 추진 중)’, ‘성북구 일자리카페(성북구 동서문로 20가길 34)’ 등 성북구에 유사 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지리적 편중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넷째, 이용자를 청년으로 한정하나, 청년이 아닌 미성년자, 고연령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운영상 문제점 해소 및 청년만의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과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민간위탁금 산출기초〉

○ 금 액 : 320백만원('18년 예산편성 요구액)			
(단위: 천 원)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320,000	124,000	64,500	131,500

1) 성북구 문화복합미디어센터는 연면적 9,150㎡(지하2층, 지상4층)의 규모이며 시청 자미디어센터,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공연장, 기타 용도로 건립할 예정임.

○ 산출내역(안)

구 분	산 출 금 액		주요내용
계	320,000		
인 건 비	124,000		
인력운영(전담인력)	샐러: 3,500천 원*1명*12개월=	42,000	각종 수당 일체 포함 *기존 무중력지대에 준함
	매저: 3,000천 원*2명*12개월=	72,000	
4대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0,000	
운 영 비	64,500		
공공요금 및 제세	2,000천 원*12개월=	24,000	
우편통신비	320천 원*12개월=	3,840	
임차료(각종 장비 임차)	600천 원*12개월=	7,200	
수선유지비(시설관리)	395천 원*12개월=	4,740	
자산취득비(장비·물품 구입)	300천 원*12개월=	3,600	
용역비(청소, 주말·대체운영)	1,300천 원*12개월=	15,600	
회의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 등)	200천 원*12개월=	2,400	
소모품(사무용품, 복사지 등)	160천 원*12개월=	1,920	
여비(시내·외 출장)	100천 원*12개월=	1,200	
사 업 비	131,500		
주체 형성 생태계 조성		60,000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원 - 모임, 실행 프로젝트 지원	5,000천 원*10팀=	50,000	
청년시민포럼 -사례발표회	10,000천 원*1회=	10,000	사례비 및 홍보비 포함
청년 도시·사회 프로젝트		49,000	
작은 도시재생학교 -현장학습, 실행학습	24,000천 원*1회=	24,000	
일상 사회혁신 프로젝트 - 1박2일, 상시 프로젝트	2,500천 원*10팀=	25,000	프로젝트비 포함
공간활성화 및 공간네트워크 지원		22,500	
공간이용자 멤버십 -운영위원회, 자원 활동가	500천 원*20회=	10,000	
청년 공간운영자 네트워크 -협약 및 노하우 공유	500천 원*9회=	4,500	
청년 공유지 모임 -연구, 학습 및 네트워킹	2,000천 원*4회=	8,00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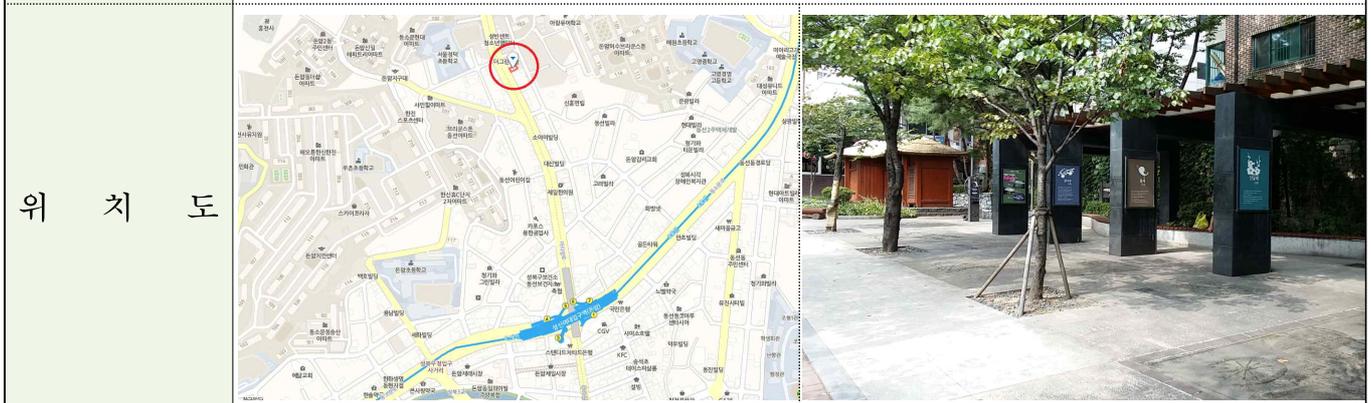
1. 제안이유

- 가. 성북구 지역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및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공용공간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 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라,
- 다. 청년사업, 공간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시 설 명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운영
위 치 · 규 모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5가 147-10 / 506.7㎡
지 원 시 설	휴게공간, 코워킹스페이스, 공유부엌, 연습·창작공간, 사무실 등
개 소 일 자	2017. 11월(예정)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2018.01.01. ~ 2019.12.31.)
- 위탁업무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시설 관리·운영 일체
 - 스스로 청년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주체형성' 중심의 생태계 조성
 - 청년문제 발견·해결을 위한 포럼·강좌·모임 등 커뮤니티 지원
 - 도시·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실행
 - 지역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학교 운영
 - 청년 간 지식·경험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안 도출
 - 청년공간 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
 - 공간 이용자 멤버십 운영, 공간 이용 당사자 운영위원회 구성
 - 성북구 청년 공간운영자 네트워크 구성
 -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연구·학습모임 지원
- 소요예산 : 320백만원('18년도 예산편성 추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 및 제19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 경험이 있고, 민간자원과 연계가 활발한 민간기관(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 다양한 민간 자원과 연계, 활용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의 창의적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나. 예산조치 : 2018년 예산편성 추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공간지원팀 이 민 성(☎ 2133-6591)